

위험성평가에 기반 둔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해나가고, 노·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도 점차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고 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점점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등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한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의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노동부→고용노동부 명칭 변경 추진

정부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81년 노동부 출범이후의 노동행정 수요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정책' 기능을 신설하되 직업안정, 실업대책 기능은 고용정책 기능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을 정부조직법에 신설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서 통과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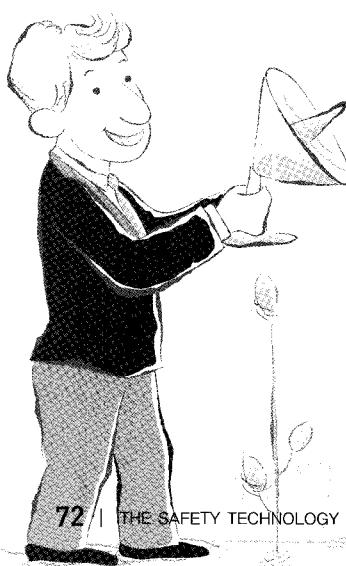
노동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가 지난 2008년에 비해 2,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재해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는 97,821명, 재해율은 0.7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비(재해자 95,806명, 재해율 0.71%)로 재해자는 2,015명 증가한 수치이며, 재해율은 0.01p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는 2,181명, 전체 사망발인율은 1.57p로, 각각 전년 대비로 241명, 0.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고성 사망자수는 1,401명, 사고성 죽어버린인율은 1.01p로, 2008년에 비해 각각 47명, 0.06p 감소했다.

전체 재해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사업(33,961명, 34.7%), 5~49인 사업장(44,196명,



45.2%), 50~54세 근로자(14,942명, 15.3%), 전도재해(20,184명, 20.6%), 유통질병(4,879명, 5%)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의 경우 건설업(559명, 39.9%), 5~49인 사업장(545명, 38.9%), 60세 이상 근로자(266명, 19.0%), 추락재해(450명, 32.1%)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3,218명, 36.9%), 5~49인 사업장(3,580명, 41.1%), 60세 이상 근로자(1,455명, 16.7%), 유통질병(4,879명, 55.9%)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고, 여러 국책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예상과는 달리 재해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재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서비스업과 임업 등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집중관리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예상보다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 1만여종으로 확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이 최근 1만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분류를 완료하고 전국 사업장에 화학물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하던 6천여종(6,322종)의 화학물질을 1만여종(11,377종)으로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표준화 제도인 GHS 기준에 맞춘 것이다. UN이 합의한 GHS 제도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통일화로 국제간 교류를 촉진하고 취급자의 안전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별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연구원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MSDS-Editing’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제공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GHS 제도 이해를 대비해 왔다.

이번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확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경고표지 작성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혼합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은 물론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교육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확대된 화학물질 정보검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경고표지 작성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MSDS/GHS’ 코너에서 활용하면 된다.

산재예방 융자금·보조금 지원제도 바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계 교체 등 설비투자나 안전장구 마련에 지원되는 융자금·보조금 지원제도가 대폭 바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안)’을 3월 4일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융자·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축소되는 대신 수혜사업장 수는 확대될 계획이다.

먼저 안전인증대상품 그리고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융자대상품으로 추가하여 안전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대신 융자한도액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민간기관의 경우 최대 5억 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구매·활용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간 총 10년 내에서 거치기간을 최대 5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삭제된다.

아울러 융자결정 취소 조항도 신설하여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설업종을 제외하여 보조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 보조한도액도 축소되고, 보조조건이 변경된다.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축소하며, 고용증가된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인정 또는 사고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투자금액’을 삭제하고, 단일품목 최대지원금액으로 ‘유해공정개선사업 1,000만원’을 신설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부·공단·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을 최소화하고, 2010년도 재정지원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융자·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으로써 수혜사업장 수를 확대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현행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과 점검이 시행된다. 또 해당 주택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등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참고로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